

2026년 파주시 농어촌지역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인정 고시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2026년 파주시 농어촌지역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인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11일

파 주 시 장

1. 근거법령

- 「영유아보육법」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

2. 특례인정지역 : 도서·벽지·농어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

- 읍면지역 : 문산읍, 조리읍, 법원읍, 파주읍, 광탄면, 탄현면, 월롱면, 적성면, 파평면
- 동지역(일부) : 운정1동, 운정2동, 운정3동, 운정4동, 운정5동, 금촌3동, 교하동

※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의 범위

1. 「도서·벽지 교육 진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·벽지 지역
2. 행정구역상 읍·면지역
3. 동 지역(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)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
3. 특례인정기간 : 2026. 3. 1. ~ 2027. 2. 28.

4. 특례인정범위

-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 허용

구 분		0세	1세	2세	3세	4세 이상
원 칙		3명	5명	7명	15명	20명
특례 인정 범위	기본보육	4명 이내	7명 이내	9명 이내	19명 이내	24명 이내
	연장보육	7명 이내 (0세 포함시 5명 이내)			20명 이내	

○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

구 분	일반시설	특례인정시설	비 고
정원 20인 이하	겸임 가능	겸임 가능	
정원 21 ~ 39인	겸임 불가능	겸임 가능	
정원 40인 이상	겸임 불가능	겸임 불가능	

5. 특례인정조건

○ 초과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

-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의 최소 15%이상을 해당 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에 사용해야 함